별표 2

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

- 1. 공사내용
- 2. 하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
- 3.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
- 4. 하도급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·방법 및 금액
- 5. 공사의 중지, 계약의 해제나 천재·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6. 설계변경·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7.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
- 8.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
- 9.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
- 10.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
- 11.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의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12.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
- 13.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
- 14.공사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
- 15.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
- 16.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
- 17.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